

고 시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- 16호
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, 군산, 대불, 울촌, 동해, 울산,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5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2. 19.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2025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

1. 적용범위

-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

2.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(월별)

- 마산자유무역지역 : 44.96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- 군산자유무역지역 : 10.76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- 대불자유무역지역 : 8.01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- 동해자유무역지역 : 21.4 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- 울촌자유무역지역 : 8.2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- 김제자유무역지역 : 5.78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- 울산자유무역지역 : 13.24원 × 토지, 건물 임대면적(제곱미터)

3.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

-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12회로 분할하여 부과한다.
 - 매월 : 1일 ~ 말일까지
-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, 그 납부기한은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.
단,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.
-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제징수법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.
-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,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부 칙 -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.
3. (폐지고시)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- 59호(2024. 4. 9)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